

『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7월 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 :

- 2010년 7월 21일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
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- 2010년 12월 20일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
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이 원 경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
개선·보완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
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원활히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제명을 허가받은 명칭 “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” 으로 동일하게 변경

○ 의료법인의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,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확대 규정(안 제4조제1항의3)

- 요양병원입원환자의 실태에 적합한 전문의로서의 진료와 병원장 겸임 가능
-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에 기여

라. 참고사항

○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의료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2008년 4월 개원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- 제명을 “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” 에서 “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” 으로 변경하고
- 의료법인의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태에 적합한 전문의로서의 진료와 병원장을 겸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 관련규정에 저촉사항 없으나 병원장의 자격범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